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18
----------	-------

발의연월일 : 2025. 9. 16.

발 의 자 : 이강일 · 강준현 · 김남근
김남희 · 김현정 · 민병덕
박상혁 · 박홍배 · 이상식
이용우 · 임미애 · 허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 정의에 국외사업자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는 국외사업자를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2022헌마430). 이로 인해 국외사업자가 원사업자가 되는 하도급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역외 적용 규정이 없어 국외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자료제출 등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수급사업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3호,

제2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내에서 발생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국외사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국내에서 발생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국외사업자는 제외한다.

제2조의2 및 제2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0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원사업자로서 자산총액, 국내에서 발생한 연간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의 이행
2.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를」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원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원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원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원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사업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생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u>이하 이 호에서 같다</u>]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2. ----- ----- ----- ----- ----- ----- ----- ----- ----- ----- <u>이하 이 항에서 같다</u> ----- ----- ----- ----- ----- -----.

<신 설>

③ ~ ⑰ (생략)

<신 설>

<신 설>

3. 국내에서 발생한 직전 사업 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국외사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국내에서 발생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국외사업자는 제외한다.

③ ~ ⑰ (현행과 같음)

제2조의2(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0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원사업자로서 자산총액, 국내에서 발생한 연간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의 이행

2.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원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원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제30조의2(과태료) ① ~ ④ (생략) <u><신 설></u> ⑤ ~ ⑦ (생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u>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원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u> <u>④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원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u> 제30조의2(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1. <u>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u> 2. <u>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u>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⑨ -----제8항----- ----- ----- -----.
---	--